

입시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입학처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은 (삭제 2019.02.21.)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02.21.)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시험의 시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학시험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의 채점 및 답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5. 입학시험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집과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학팀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의 주관) 위원회의 사무는 입시본부에서 주관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1-10~2 제6편 위원회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